

거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

의안번호	32
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8. 8. 22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개정사유

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'98. 7. 4일부터 쇠고기 소비촉진과 산지 소 값 회복을 위하여 농가에서 자가소비 도축을 원할 경우 자가 도축을 허용함에 따라 소 도축에 따른 도축세를 감면하여 농촌 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. 다만,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함 【안 제14조의2】

■ 개정근거

-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 (경남도 세정13400 ~ 10165, '98. 7. 21)
- 지방세법 제9조

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

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 2(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)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시한)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<신 설></p>	<p><u>제14조의2(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)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.</u></p>

처분 승인 신청서

(독가촌 개간 농경지 매각)

1. 재산의 표시

가. 재산가격 평정

종별	소재지	지목	수량(면적)	공시지가	비고
토지	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426-1외 47필지	전 : 40 답 : 1 과 : 3 임 : 4	265,849m ² (80,419평)	66,263천원	m ² 당 249원

- . 등록전환하기전 임야 상태의 공시지가임
- . 매각시는 감정평가후 예정가격 결정

나. 재산현황

종별	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			현용도	관리상태	연고자
	년월일	목적	가격			
토지	1971 ~1973	독가촌 집단 이주자 개간농경지 지원	미상	농경지	양호	고제면 봉계리 1426 김옥곤외 27명

- . 매각대상재산내역 : 따로붙임

2. 처분사유

개간농경지 조성 경위

- . 1969년 울진,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 공비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화전민등 당시의 독가촌 주민들을 집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

- 대비정규전지침 (대통령 훈령 제28호 : 1970. 1. 20)에 근거한 “취약지대책사업추진지침”에 의거 국비(내무부, 보사부, 산림청)를 지원받아 세대당 8.5평의 주택과 1~1.5HA의 개간 농토를 분배

□ 당시 우리군의 개간 농경지 분배 내역

- 지원기간 : 1971~1973(3년간)
- 분배내역

(단위 : HA)

읍 면	필 지	면 적	세 대 수	비 고
계	109	208.99	240	
응 양 면	6	10.00	6	
고 제 면	63	108.40	145	
북 상 면	23	55.60	55	
위 천 면	1	8.00	9	
마 리 면	8	7.99	6	
가 북 면	8	19.00	19	

□ 지원당시 약정사항

- ① 이 주택은 향후 5년간 거창군유 재산으로 한다.
- ②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책임을 지고, 주택의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.
- ③ 입주자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입산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개간 농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이 주택은 입주자 임의로 대여하거나 양여 할 수 없다. 허가없이 권리를 양수한 자의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⑤ 주택을 증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□ 당시입주자 사후관리 요령

- 주택은 5년간 군소유로 하고 입주자에게 무상대여하며 입주 5년후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양여한다.

- . 개간지는 5년간 군소유로하고 경작자에게 무상대여하며 경작 5년 후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양여한다.

□ 개간농경지 무상양여 과정

- . 근거 :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2조 1항 6호
 - 용도가 지정된 국고 보조금에 의한 재산으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때
- . 추진과정
 - 89. 4. 20 : 고제면 새마을 지도자와 간담회시 당시 정장식 군수에게 무상양여 건의
 - 89년중 : 현황 및 자료조사 (새마을과 개발계)
 - 90년 : 경작면적조사 및 측량실시
 - 무상양여 내용

(단위 :

m²)

일 시	읍 면	인원	필지수	면 적	비고 (양여대상)
계		28	43	135,246	
91. 6. 17	고제	8	13	33,286	당초분배받아 계속경작중인자
95. 5. 25	고제	13	22	61,414	"
95. 12. 29	고제	7	8	40,546	당초분배받은자의 상속자(가족)

□ 전매경작 개간농경지 매각 준비 과정

가. 매각검토 동기

- . 97. 5. 29 고제면 봉계리 1284 김백원외 17명이 전매경작중인 개간농경지의 무상양여를 요청
- . 양여가 불가하면 현재 경작자에게 매각 요청
- . 97. 7. 11 양여는 불가하고 매각을 검토할 것임을 통보

나. 무상양여 불가 사유

- . 개간 농경지 분배당시 약정사항에 위배되고
- . 개인간의 양도행위는 승인받지 아니한 불법행위이며
- . 공유재산의 개인간 전매행위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 발급 불가

다.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

- . 전매경작 개간 농경지 전수조사 : 97. 7. 28~97. 9. 5
- . 조사결과 및 공부검토

(단위 : m²)

읍면	당 초 조 사 (읍면)			공부확인결과제외대상			검 토 대 상		
	필지수	면 적	경작자	필지수	면 적	경작자	필지수	면 적	경작자
계	38	368,908	39	8	61,357	9	30	307,551	30
웅양	5	3,300	6	5	3,300	6			
고제	29	288,117	28	2	32,000	2	27	256,117	26
북상	4	77,491	5	1	26,057	1	3	51,434	4

- 공부확인 : 개간농경지허가대장, 토지(임야)대장, 등기부등본
- 제외대상 : 개간농경지 허가 재산이 아님.

○. 현지측량 실시 : 97. 11~12월 (2개월간)

- 당초허가 받은 개간농경지 중 현재 경작중인 토지

○. 측량결과 현지 재확인 : 98. 3월

○. 측량결과 공부정리 : 98. 4~5월

- 분할, 등록전환, 재분할, 지적도·토지대장정리, 등기조치

○. 경작자의 매수가능여부 조사 : 98. 4월

- 매수신청의사 재확인
- 농지취득자격 여부 확인
- 농지소유 상한 확인

라. 매각대상재산 최종 결정

○. 대 상

- 당초 독가촌개간농경지로 허가 받은 재산중 현재까지 경작중인 토지
- 경작자가 매수신청한 토지
- 실경작자 및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자
- 농지소유상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토지

○. 내역

(단위 : m², 명)

읍 면	필지수	면 적	매수신청자	비 고
계	48	265,849	28	
고 제 면	39	212,379	24	
북 상 면	9	53,470	4	

※ 개인별 내역 : 따로붙임

□ 처분사유

- . 당초 재산 조성 목적이 독가촌 주민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우리군의 소유의사가 없는 재산이며
- . 20년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사용하면서 임야상태에서 우량농지로 개량한 노력이 인정되고
- . 군에서 계속 보존 관리할 가치가 없는 재산임으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영농의욕에 도움을 주고
- . 매각재원은 대체재산조성에 지원코자함

3. 처분방법

- 수의계약 (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2호)
 - 농경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때

4. 처분재원 비도(대체재산 조성)

(단위 : 천원)

재산 조성 내역	위치 및 수량	금 액	비 고
공공용지 확보 (도시계획사업)	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 외 7개지구	(2,163,000)	

5. 사업계획서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 업 량	시행기간	사 업 비			사업효과
			계	국도비	군 비	
계			3,263,000	1,100,000	2,163,000	
대동지구 소도읍개발사업	L=427m B=8-10m	98.7 ~ 99.7	500,000		500,000	주민숙원사업 및 시가지 교통난해소
웅양소방도로 개설공사	L=195m B=8m	98.4 ~ 98.12	150,000		150,000	
죽전소방도로 개설공사	L=50m B=10m	98.5 ~ 98.12	600,000	400,000	200,000	
송정소방도로 개설공사	L=157m B=8m	98.4 ~ 99.4	300,000		300,000	
충혼탑~거열로 도로확장공사	L=205m B=15m	98.6 ~ 99.6	300,000		300,000	
대동리소방도로 개설공사	A=352m ²	97.4 ~ 98.6	133,000		133,000	
강양소방도로 개설공사	L=59m B=8m	98.4 ~ 98.12	480,000		480,000	
가조소방우회 도로 개설공사	L=489m B=8-12m	98.7 ~ 2001.7	800,000	700,000	100,000	

6. 관련공부 확인

- 토 지 대 장 : 거창군
- 등기부등본 : 거창군

7. 위치도 : 별책참조

8. 지적도 : "

9. 사 진 : 별책참조

10. 관련법규

- . 지방재정법 제83조 - 잡종재산의 처분
- 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- 잡종재산의 매각
- 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호 : 수의계약 사유
 -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
- . 98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
 -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의 재산

11. 매각조건

- . 매수재산을 10년간 농경지로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
 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의 2